

김중연 선생님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
제2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2025-11-05)

수정자료(1) : p111~115 『Ⅲ. 제3자 소송담당』 내용 변경

최근 [대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내용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선, 제3자 소송담당과 관련하여 추심명령의 경우, 병행형 소송담당으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재 111p]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그리고, 판례변경에 따라 중복소송과 기판력, 그리고 소송참가 부분 역시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변경 판례의 중복적인 학습을 위해서 추후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관련된 곳에서 추록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Ⅲ. 제3자 소송담당

1. 제3자 소송담당의 의의 및 유형

(1) 의의

권리귀속주체가 아니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수행할 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소송물인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가 반드시 자기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관계의 주체 이외의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경우를 ‘제3자 소송담당’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제3자인 소송담당자이고, 권리의무의 주체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리과 다르다.

(2) 유형

1) 임의적 소송담당

(가) 제3자 소송담당에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수여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를 임의적 소송담당이라고 한다.

(나) 제53조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판례가 변호사대리원칙을 잠탈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임의적 소송담당은 앞서 설명한 [민법상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부분을 참고하고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2) 법정 소송담당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이 부여된 경우를 말한다. 특히 법정소송담당은 i)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과 함께 소송수행권을 갖는 병행형 소송담당(민법 제404조, 민법 제265조 단서,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과 ii)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갈음형 소송담당(유언집행자)이 있다.

2. 병행형 소송담당 - 채권자대위권 ★[기출·핵심 050]

(1)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

1) 학 설

이에 대하여 i) 법정소송담당설은 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가 구비되어야 하며, 피대위권리는 본안문제로 본다. 반면 ii) 독립한 대위권설은 채권자대위소송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구비되며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권리의 존재는 본안문제로 본다.

2) 판 례

판례는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자기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라고 하여 법정소송담당설의 입장이다(대판 1993.3.26. 92다32876).

3) 검 토

(가) 채권자가 종국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이며, 채권자대위권의 효과가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인정된 법정소송담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따르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중 i) 피보전채권의 존재(및 기한의 도래), ii) 보전의 필요성, 그리고 iii) 채무자의 권리불행사는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이루는 소송요건에 해당하고 iv) 채무자의 피대위권리의 존재는 본안요건에 해당한다(소송물에 해당하므로 피대위권리가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청구기각의 사유가 된다).

(2) 요건별 판례의 구체적 검토

1)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① 학 설

이에 대하여 i) 법정소송담당설의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당사자적격의 기초가 되기에 당사자적격이 흠결된 경우 소가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소각하설과 ii) 독립한 대위권설의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실체법상의 법률요건이므로 본안판단의 문제라 하여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청구기각설의 견해가 대립한다.

② 판 례

(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법원으로서의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대판 2009.4.23. 2009다3234). 만약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해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판 1992.11.10. 92다30016).

(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만약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역시 피보전채권인 채권자의 채무자

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21.7.21. 2020다300893).

③ 검토

위에서 살펴본 대로 법정소송담당설이 타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당사자적격의 기초로 보아야 하며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할 경우 본안의 심리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법원은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그리고 이러한 소송판결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발생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판력] 부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2) 보전필요성의 부존재

(가)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 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20.5.21. 2018다879 전원합의체).

(나) 판례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대판 2002.5.10. 2000다55171).

3) 소송요건의 증명책임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증명하면 족하고,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또는 그 채권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예를 들면, 원고인 채권자가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였더라도 법원은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까지는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대판 2007.5.10. 2006다82700).

(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판 2019.1.31. 2017다228618). 그러나, 채무자가 그 소송절차에서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항변을 하였고, 그러한 사유가 현출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심리를 한 결과, 실제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를 대위할 권한이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0.5.26. 98다40695).

3. 병행형 소송담당 - 추심명령의 경우 ★[기출·핵심 051]

(1) 압류명령의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10.11.25. 2010다64877).

(2) 추심명령의 경우

1) 쟁 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판 례

① 종전 판례(적격상실설)

종전 대법원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하여 갈음형 소송담당으로 보았다(대판 2000.4.11. 99다23888).

② 변경 판례(적격유지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병행형 소송담당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대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의 핵심적인 논거 3가지는 다음과 같다.

㉡ (채권은 여전히 채무자가 보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채무자의 실질적 이익의 보호)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압류채권을 보유하므로 시효중단 또는 제소기간 준수 등을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고, 향후 추심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 취하 등으로 추심권이 소멸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둘 이익도 있다.

㉣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소송의 계속 중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그동안 진행해 온 소송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는다.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에 반하고 추심채권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3) 결 토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종전 판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관점에서 타당하다. 다만, 이에 따라 추심채권자와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되어,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추심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될 위험에 있다(주의할 점은 제3채무

자는 집행장에 항변 또는 공탁 등 방어수단이 존재하므로 이중집행의 위험은 없다는 것이다).

(나) 이에 따라 채권자대위소송과 마찬가지로 i) 중복소송(제259조)과 시효중단(제265조), ii)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제218조), iii) 소송참가(제78조, 제83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각각 관련된 곳에서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3) 전부명령의 경우

(가) 채권자가 전부명령까지 받은 경우 채무자의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법률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전), 전부명령 이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채무자의 청구는 기각된다(대판 1998.8.21. 98다15439).

(나) 이행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본안에서 가릴 문제이다, 이는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양도인의 청구 역시 기각된다.

4. 갈음형 소송담당 - 유언집행자

(가)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10.10.28. 2009다20840).

(나)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판 2011.6.24. 2009다8345).

수정자료(2) : p201~203 『4. [추심금청구소송]』 내용 변경

최근 [대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내용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복소송에 관한 [교재 201p]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그리고, 판례변경에 따라 기판력, 소송참가부분 역시 수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변경 판례의 중복적인 학습을 위해서 추후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관련된 곳에서 추록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4. [추심금청구소송] ★[기출·핵심 095]

(1) 금전채권의 압류·추심명령의 효력

1) 종전 판례(적격상실설)

종전 대법원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하여 같은형 소송담당으로 보았다(대판 2000.4.11. 99다23888).

2) 변경 판례(적격유지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병행형 소송담당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대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종전 판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관점에서 타당하다. 다만, 병행형 소송담당으로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채권자대위소송과 마찬가지로 추심금청구소송에서도 제259조의 중복된 소제기의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바, 이하에서 유형별로 검토하기로 한다.

(2) 추심금소송의 중복소송 해당 여부

1)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 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① 종전 판례 법리의 경우

종전 판례 법리에 따르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해야 하였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인 상태에서 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추심의 소는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았다(대판 2013.12.18.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② 변경 판례 법리의 경우

㉠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고, 채무자가 먼저 제기한 이행의 소와 추심채권자가 나중에 제기한 추심의 소는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므로, 그 추심의 소는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특히,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서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채무자가 아직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이다.

2) 압류채권자의 추심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

① 종전 판례 법리의 경우

종전 판례 법리에 따르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

② 변경 판례 법리의 경우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지만, 이미 추심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게 된다.

3) 추심소송 계속 중 다른 추심채권자가 다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① 종전 판례 법리의 경우

종전 판례 법리에 따르면, 어느 한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그 변론종결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어졌다(대판 2020.10.29. 2016다35390). 그 결과 어느 한 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소송물에 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았다.

② 변경 판례 법리의 경우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어느 한 추심채권자가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를 통하여 다른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에 따라 어느 한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 계속 중 다른 추심채권자가 같은 소송물에 관하여 제기한 추심의 소는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므로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 형	종전 판례 법리	변경 판례 법리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 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전소 채무자 → 후소 채권자)	중복된 소제기 부정	중복된 소제기 인정
압류채권자의 추심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 (전소 채권자 → 후소 채무자)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부적법 각하	당사자적격은 인정되나, 중복된 소제기 인정
추심소송 계속 중 다른 추심채권자가 다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전소 채권자 → 후소 채권자)	중복된 소제기 부정	중복된 소제기 인정

수정자료(3) : p211 『(2) 추심금청구소송의 경우』 내용 변경

최근 [대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내용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효중단에 관한 [교재 211p]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2) 추심금청구소송의 경우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i)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다만 ii)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대판 2003.5.13. 2003다16238). 따라서 6개월 내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피압류채권의 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민법 제174조).

(나) 만약,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6개월 내에 별도의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02.4.26. 2001다59033). 그 후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부분을 참고). 이 경우에도 금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에게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은 여전히 부여되어 있다(대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따라서,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9.7.25. 2019다212945).

수정자료(4) : p476~477 『3. 추심금청구소송』 내용 변경

최근 [대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내용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교재 476p]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또한 강의가 모두 끝나면, 정식으로 출판사를 통해 추록을 제작하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3. 추심금청구소송 ★[기출·핵심 238]

(1) 추심명령에 따른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여부

1) 종전 판례(적격상실설)

종전 대법원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하여 갈음형 소송담당으로 보았다(대판 2000.4.11. 99다23888).

2) 변경 판례(적격유지설)

(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병행형 소송담당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대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나) 병행형 소송담당으로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채권자대위소송과 마찬가지로 추심금청구소송에서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문제되는 바, 이하에서 유형별로 검토하기로 한다.

(2) 기판력이 채무자와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1) 추심채권자가 받은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① 종전 판례 법리의 경우

종전 판례 법리에 따르면, 추심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결과와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제218조 제3항).

② 변경 판례 법리의 경우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제218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은 동일하다.

2) 채무자가 받은 기판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① 종전 판례 법리의 경우

종전 판례 법리에 따르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채무자가 이행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i) 변론종결 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고, ii) 변론종결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으로서 기판력이 미친다(제218조 제1항).

② 변경 판례 법리의 경우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이행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후와 소송결과와 관계없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친다.

3) 추심채권자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① 종전 판례 법리의 경우

종전 판례 법리에 따르면, 어느 한 채권자가 받은 추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변론종결 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대판 2020.10.29. 2016다35390).

② 변경 판례 법리의 경우

(가)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 결과 어느 한 채권자가 받은 추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를 통하여 다른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치게 되며 이는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시기가 변론종결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한다.

(나) 즉 새로운 법리에 따르면 누가 소를 제기하든 그 확정판결은 채무자, 추심채권자 및 다른 추심채권자들에게 변론종결 전후와 소송결과를 불문하고 기판력이 미치므로 소송 창구가 일원화 되고 확정판결 사이에 모순·저촉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제3채무자의 응소 부담도 최소화된다.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 형	종전 판례 법리	변경 판례 법리
추심금청구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전소 채권자 → 후소 채무자)	인정	인정
채무자가 받은 기판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전소 채무자 → 후소 채권자)	변론종결 전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는 부정	변론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추심채권자에 인정
	변론종결 후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는 인정	
추심채권자가 받은 기판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전소 채권자 → 후소 채권자)	부정	인정

수정자료(5) : p606 내용 추가

최근 [대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내용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참가소송과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내용을 재정리 하였습니다. 우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관련하여 [교재 606p]의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요건』 위에 『5. 채권자의 추심소송 중 채무자 참가』를 추가합니다.

5. 채권자의 추심소송 중 채무자 참가

(1) 종전 판례(적격상실설)

종전 판례에 따르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제83조의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고,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을 할 수 있었다.

(2) 변경 판례(적격유지설)

㉠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변경된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채무자는 여전히 당사자적격이 있으므로 제78조에 따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뿐만 아니라 향후 압류명령 신청 취하 등으로 추심권이 소멸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도 할 수 있다. 만약, 추심소송에 채무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하는 경우 이들의 소송은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수정자료(6) : p611 내용 추가

최근 [대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내용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참가소송과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내용을 재정리 하였습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이어 공동소송참가와 관련하여 [교재 611p]에서 『2)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이하에 『3) 추심금청구소송의 경우』를 추가 합니다.

3) 추심금청구소송의 경우

① 추심금청구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소송참가

추심금청구소송 중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의 소송참가 방식은 제83조의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한다. 즉, 다른 추심채권자를 포함하여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다른 채권자는 추심소송에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2항에 따른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추심금청구소송에 다른 추심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하는 경우 이들의 소송은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② 채무자 이행소송 중 추심채권자의 소송참가

(가) (종전 판례 - 적격상실설) 종전 판례에 따르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상실한 당사자적격이 채권자에게 승계되므로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소송에 제81조, 제79조에 따른 승계참가를 할 수 있었다(대판 2013.12.18.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나) (변경 판례 - 적격유지설)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은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이에 따르면 i)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아 추심채권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81조, 제79조에 따른 승계참가 요건은 충족되기 어렵다. 하지만 ii) 추심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소송에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 관여할 수 있다. 특히, 공동소송참가의 실질은 소의 제기이므로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공동소송참가를 하면 소송경제가 도모될 뿐만 아니라 판결의 모순·저촉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과 마찬가지로 중복제소를 금지한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5. 7. 23. 2013다30301).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종전 판례 법리	변경 판례 법리
추심금청구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소송참가	공동소송참가	공동소송참가
채무자 이행소송 중 추심채권자의 소송참가	제81조, 제79조의 승계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 모두 인정
추심금청구소송 중 채무자의 소송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 모두 인정